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14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일호 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 위원장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토대로 구청장이 경계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자치구 경계설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수행,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사항 등 규정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수당지급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우리 구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동법 제31조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음. 한편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에 근거한 제정안으로 금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계결정위원회도 경계설정의 결정과 아울러 그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도 의결하고 있으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필요성의 제고와 함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서울시에서는 19개의 자치구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조례가 동시에 제정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6 호
----------	---------

제출연월일: 2024.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마.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9. 12. ~ 10. 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조사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